

인천지방법원 2019. 5. 14 선고 2018나56810 판결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구상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19. 5. 14 선고 2018나56810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4. 9 선고 2017가소444611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황해

담당변호사 이지원

피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균

변론 종결 2019. 4. 16.

판결 선고 2019. 5. 14.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4. 9. 선고 2017가소44461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860,5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소외인 한"을 "소외인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민소영

판사서인덕

판사이재환